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0. 12. 28.>

(앞쪽)

제　　호

법인 설립허가증

1. 법인명칭:

2. 소 재 지:

3. 대 표 자
   가. 성　　명:
   나. 생년월일:
   다. 주　　소:

4. 사업 내용:

5. 허가 조건: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보건복지부장관
질병관리청장　직인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준수사항

1. 「민법」 및 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2.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3.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 가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
 나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
 다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4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가.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
 나.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다.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
5. 법인이 해산(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)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.
6.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

< 변 경 사 항 >

변경일	내 용	확인